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4의정서 제4조에 대한 해설서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의 금지

2024년 8월 31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Council of Europe/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24

## 목차

일러두기 .....	4
I. 본 조의 기원 및 목적 .....	5
II. “집단적 추방”의 개념 .....	5
III. 집단적 추방의 예시 .....	8
IV. 집단적 추방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예시 .....	11
V. 협약 제 13 조와의 관계 .....	12
인용 판례 목록 .....	13

##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4의정서 제4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년 1월 18일, § 154, Series A no. 25 및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2016년 7월 5일).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 89,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15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eda v. Poland* [GC], § 324).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결은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제4의정서 제4조 –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의 금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은 금지된다.”

### HUDOC 주제어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의 금지(P4-4)

## I. 본 조의 기원 및 목적

- 제4의정서는 초안이 작성된 1963년 당시 집단적 추방을 다른 최초의 국제 조약이었다. 의정서 설명보고서에 따르면 제4조의 목적은 “근래 역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종류의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4조] 및 제3조제1항(자국민 추방 금지)의 채택이 과거 발생한 집단적 추방 조치를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동의”가 있었다(*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 174).
- 동 조는 주로 여러 외국인의 개인적 정황을 심리하지 않아 관계 당국이 취할 조치에 반론을 제기할 기회도 없이 추방되지 않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ibid.*, § 177).

## II. “집단적 추방”的 개념

- “집단적 추방”이란 “외국인 집단에 출국을 강제하는 모든 조치로, 집단에 속한 외국인별 사건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기준으로 조처한 경우만 예외”로 이해되어야 한다(*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2016, § 237; *Georgia v. Russia (I)* [GC], 2014, § 167; *Andric v. Sweden* (dec.), 1999; *Čonka v. Belgium*, 2002, § 59; *Sultani v. France*, 2007, § 81 및 위원회 결정 *Becker v. Denmark*, 1975; *K.G. v. Germany*, 1977; *O. and Others v. Luxembourg*, 1978; *Alibaks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1988; *Tahiri v. Sweden*, 1995). 해당되는 개인이 각자의 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당국에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다면, 다수의 외국인이 비슷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집단적 추방”이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Alibaks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1988년 12월 16일 위원회 결정; *Andric v. Sweden* (dec.), 1999; *Sultani v. France*, 2007, § 81). 그렇다고 해도 개인별 사건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리한 경우 “제4의정서 제4조 준수 여부를 결정할 때 추방 명령 집행의 배경이 더 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Čonka v. Belgium*, 2002, § 59). 추방의 본질이 “집단적”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인원수 또는 구성원이 특정 집단에 속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은 없다(*N.D. and N.T. v. Spain* [GC], 2020, §§ 193–199). 제4의정서 제4조에 따른 청구는 집단으로 추방된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이 단독으로 제기해도 된다(예를 들어, *Shahzad v. Hungary*, 2021 참조).

- 제4의정서 제4조에 따라 협약 기구에 제기된 사건은 통상적으로 피청구국 영내에 있는 외국인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K.G. v. Germany*, 1977년 3월 1일 위원회 결정; *Andric v. Sweden* (dec.), 1999; *Čonka v. Belgium*, 2002), 최근 피청구국 정부가 제4의정서 제4조의 적용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소가 판결한 사건 중에는 외국인들이 협약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사건에서 이탈리아 당국은 이주자를 공해상에서 차단하여 즉시 귀환하게 하는 이른바 “푸시백(push-back)” 조치를 취하였다.

재판소는 영외인 공해상에서 퇴거한 경우 제4의정서 제4조가 적용될지 고심하였다. 재판소는 협약의 본문 또는 준비문서가 해당 조항의 역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4의정서 초안 작성자들에 따르면, “추방”이라는 단어는 “현재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미(장소에서 쫓아낸다)”로 해석한다. 나아가, 제4의정서 제4조가 협약 당사국의 영내로부터 집단으로 추방되는 것에만 적용된다면, 현대의 아주 양상에서 상당 부분이 조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목숨을 걸고 바다로 이동하지만 국경까지 가지 못한 이주자들은 육로 이동과 달리 개인적 정황에 대한 심리를 받을 자격도 얻지 못한 채 쫓겨난다. “관할권” 개념처럼 추방도 주로 영역(領域)에 관한 개념이다. 다만, 일국이 예외적으로 영외에서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재판소가 판단한 경우, 해당 국가의 치외 관할권 행사가 집단적 추방이라는 형태를 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재판소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해양 환경이 법의 적용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도 거듭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 당국이 공해상에서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여 외국인을 차단한다는 맥락에서 퇴거한 것은 이주자가 해당 국가의 국경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다른 국가로 되돌려 보내는 효과가 발생하여 제4의정서 제4조에 따라 문제가 되는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관할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났다(*ibid.*, §§ 169–182).

6. *Sharifi and Others v. Italy and Greece*, 2014 사건에서는 이탈리아행 선박에 몰래 승선하여 이탈리아 안코나항에 도착한 이주자를 차단하여 그 자리에서 강제 퇴거하였고,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가 제4의정서 제4조가 적용되는 물적 관할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각하한 재판소는 어떻게 보아도 동 조항이 두 사건 모두에 적용되므로 청구인들을 둘려보낸 때가 이탈리아 영역에 도착한 후인지 전인지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ibid.*, §§ 210–213).

7. *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2016 사건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청구인들에게 적용한 절차가 국내법상 “추방”이 아닌 “퇴거를 수반한 입국 거부”로 분류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미 확립된 정의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탈리아 영역(람페두사섬 리셉션 센터에서 팔레르모 항에 정박한 선박으로 이동)에 있던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리아에서 퇴거 및 트니지로 귀환 조치된 것은 제4의정서 제4조가 의미하는 “추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ibid.*, §§ 243–244).

8. *N.D. and N.T. v. Spain* [GC], 2020 사건에서 다수의 이주자가 집단을 이루어 무단으로 국경을 넘으려 시도하였고, 이에 재판소는 육지 경계에서 외국인을 강제로 즉각 귀환 조치하는 것이 제4의정서 제4조를 적용할 사안인지 처음으로 살펴보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벽이 제1조의 목적상 스페인의 “관할권”에 속하는 멜리야 육지 경계임을 확인한 후 재판소는 제4의정서 제4조에서 사용하는 “추방” 개념이 체약국 육지 경계이자 쟁ген 지역의 외경일 수도 있는 곳에서 발생한 외국인 미입국에도 적용되는지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해상으로 체약국 영내에 들어오려던 청구인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 고려사항이 육로로 국경을 넘으려다 체약국 영역에서 강제 퇴거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후자의 경우 “추방”이라는 용어의 다른 해석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추방”이라는 용어는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체류의 합법성, 영내에서 보낸 기간, 체포된 장소, 신분(이주자 또는 망명신청자) 또는 국경을 넘는 행위와 무관하게 외국인이 일국의 영역에서 강제 퇴거되면 모두 추방이다. 이 용어는 협약 제3조의 맥락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 두 조항은 체약국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하며, 해당인에게 이 조항에 따라 보호를 청구할 자격을 주는 근거의 존재 여부를 문제의 국가 당국이 아직 심리하지 않은 시점도 범위에 포함된다(*ibid.*, §§ 166–188). 이 사건의 경우, 스페인 보안청(Guardia Civil)은 청구인들의 의지에 반하여 수갑을 채우고 스페인 영역에서 퇴거 및 모로코로 강제 귀환 조치하였고, 이는 제4의정서 제4조가 의미하는 “추방”에 해당한다.

9. *Shahzad v. Hungary*, 2021 사건에서 피청구국 당국은 청구인을 피신청국 국경 장벽 바깥쪽, 즉 국경 장벽과 헝가리–세르비아 간 실제 국경 사이에 있는 피청구국 영역에 속하는 땅으로 이동시켜 제4의정서 제4조가 의미하는 “추방”을 당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호송된 장벽 바깥의 좁은 지구는 국경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 목적만이 있다는 점, 해당 지구에

기반 시설이 없다는 점, 강제 퇴거된 이주자들이 합법적으로 형가리에 들어가려면 일반적으로 세르비아를 통과해야 하는 경유 구역 중 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점, 형가리 경찰관이 청구인을 세르비아로 안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청구인을 대상으로 삼은 조치는 형가리 영역에서 청구인 퇴거를 목표로 삼았고 이에 성공하였다(*ibid.*, §§ 45–52).

10. 개별적 기준으로 추방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청구인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인 경우 제4의정서 제4조 위반이 아니다. 예를 들어 *Berisha and Haljit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2005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공동 비호 절차를 밟아 하나의 공통 결정을 받았고, *Dritsas and Others v. Italy* (dec.), 2011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경찰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경찰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추방 명령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 *N.D. and N.T. v. Spain* [GC],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원칙이 무단으로 육지 국경을 넘은 사람이 즉시 추방되는 “푸시백(push-back)” 상황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후 재판소는 제4의정서 제4조에 따라 제기된 즉시 귀환 조치 및 관련 시나리오에 관한 다수의 사건을 판결하였고, 사실에 입각한 상황 및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심사를 구별하였다.<sup>1</sup>

11. *N.D. and N.T. v. Spain* [GC], 2020 사건 §§ 201 및 209–211에서 재판소는 개인이 무단으로 육지 국경을 넘었다가 즉시 추방된 사건에서 제4의정서 제4조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2단계 심사는 동일하게 전개되는 사건에 적용되었다(*Shahzad v. Hungary*, 2021, §§ 59 이하 참조 및 *M.H. and Others v. Croatia*, 2021, §§ 294 이하 참조.; *A.A.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2, §§ 112–123 참조). 심사는 첫째, 국가가 국경 절차를 중심으로 합법적 입국 수단에 진정으로 유효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박해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특히 제3조에 근거하여 보호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협약 등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하는지 살펴야 한다. 둘째, 국가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게 했지만,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의 책임인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한다. 마련된 절차 사용을 막는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청구인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로 간주되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12. 청구인들이 합법적 입국 절차에 진정으로 유효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여주는 증명책임의 주체는 피청구국이며, 지금까지 결정된 모든 사건은 국가가 이런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살펴보았다(국경 통과 지점의 위치, 그곳의 신청서 제출 양식, 비호신청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줄 통역사/법률 지원 가용성 및 해당 국경 지점에서 실제로 신청하였음을 보여주는 정보. *N.D. and N.T. v. Spain* [GC], 2020, §§ 212–217과 *A.A.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2, §§ 116–122 비교 및 *Shahzad v. Hungary*, 2021, §§ 63–67과 *M.H. and Others v. Croatia*, 2021, §§ 295–304 대조). *N.D. and N.T. v. Spain* [GC],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다른 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청구인들도 베니안사르 국경 통과 지점에서 비호 신청서 제출 등 합법적 입국 절차에 진정으로 유효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피청구국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였다. 재판소는 *A.A.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2 사건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대조적으로 *M.H. and Others v. Croatia*, 2021 사건에서 피청구국 정부는 당시 크로아티아–세르비아 국경에서 망명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국경 통과 지점의 위치, 그곳의 신청서 제출 양식, 통역사/법률 지원 가용성 및 신청이 실제로 해당 국경 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소는 정부가 법률 조항을 가리키며 언급한 합법적 수단에 청구인들이 진정으로 유효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심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Shahzad v. Hungary*, 2021 사건에서 합법적으로 형가리에 입국할 유일한 가능성(두 곳의 경유 구역)은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그 곳으로의 접근은 제한되었으며(국제 보호 청구를 위해 경유 구역에 들어올 허가를 받는 사람의 수는 구역당 하루 15명으로 제한되고 사전 대기자 명단에

<sup>1</sup> 이러한 사건은 협약 제 3 조 및/또는 협약 제 3 조와 결합된 제 13 조에 따른 사안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에 대한 판례법 해설서](#) 참조.

등록해야 하는데 독신인 청구인은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작음), 허가를 관리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반하는 공식 절차가 없었으므로, 재판소는 청구인이 합법적 입국 수단에 진정으로 유효하게 접근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13. 무단으로 피청구국 영내에 들어가 국경 근처에서 체포된 이주자들이 국경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2단계 심사를 적용하는 대신 추방의 “집단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방 명령을 채택하기에 앞서 이주자들이 각자 추방에 대한 반론을 유효하게 제기할 수 있었는지 및 개인적 상황을 하나하나 진정으로 고려하였다고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Asady and Others v. Slovakia*, 2020, § 62). 이러한 심사는 국경 검문소(*M.K. and Others v. Poland*, 2020, §§ 204–211; *D.A. and Others v. Poland*, 2021, §§ 81–84, *M.A. and Others v. Latvia* (dec.), 2022, §§ 67–69 및 *Sherov and Others v. Poland*, 2024, §§ 59–61 참조) 또는 공항(청구인들이 처음에 위치 서류로 피청구국에 들어가려 했다고 해서 제4의정서 제4조에 따른 당국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재판소가 판단한 사건인 *S.S. and Others v. Hungary*, 2023, §§ 48–51 참조) 등 적법한 입국 지점에 직접 출두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심사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관계에 달려 있으며, 주어진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제공한 증거, 즉 신원 확인 절차 수행 여부 및 수행 조건(면담 수행을 위한 교육 제공 여부, 망명 신청서 제출 및 법률 지원 요청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 여부, 통역사 동석 여부, 개인이 실제로 변호사 상담 및 비호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과 독립적인 보고서(*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 185; *Sharifi and Others v. Italy and Greece*, 2014, §§ 214–225; *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2016, §§ 245–254; *Asady and Others v. Slovakia*, 2020, §§ 63–71; *M.K. and Others v. Poland*, 2020, §§ 206–210; *D.A. and Others v. Poland*, 2021, §§ 81–83; *M.A. and Others v. Latvia* (dec.), 2022, §§ 67–69) 등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14. 제4의정서 제4조의 맥락에서 미성년자가 처한 법적 상황은 성인 동반자의 상황과 연결되며, 해당 성인이 유의미하고 유효한 방식으로 동반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면 제4의정서 요건은 충족된다(*Moustahi v. France*, 2020, §§ 134–135).

### III. 집단적 추방의 예시

15. 재판소는 첫째, 추방의 대상인 개인들의 출신국이 동일한 경우 제4의정서 제4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Čonka v. Belgium*, 2002 사건에서 슬로바키아 출신 로마족 가족, *Georgia v. Russia (I)* [GC], 2014, *Shioshvili and Others v. Russia*, 2016 사건에서 조지아 국민 및 *Berdzenishvili and Others v. Russia*, 2016). 둘째, 집단 구성원의 개별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전체 집단(이주자 및 비호신청자)을 귀국 조치하는 경우 해당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Sharifi and Others v. Italy and Greece*, 2014; *M.K. and Others v. Poland*, 2020; *D.A. and Others v. Poland*, 2021; *Shahzad v. Hungary*, 2021; *M.H. and Others v. Croatia*, 2021; *Moustahi v. France*, 2020).

16. *Čonka v. Belgium*, 2002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벨기에 체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퇴거되었고, 퇴거 명령에는 청구인들의 망명 신청 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에서 청구인들과 출신국이 같은 다수가 동일한 일을 겪었다는 것에 비추어 재판소는 추방의 집단성에 대한 의심을 거둘 만한 절차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첫째, 청구인들을 강제 퇴거하기 전에 관련 정치 당국이 그러한 종류의 작전을 예고하고 유관 당국에 실행 지시를 내린 점, 둘째, 해당하는 외국인은 모두 동시에 경찰서에 출두해야 했던 점, 셋째, 출국 명령과 체포 명령이 똑같은 조건으로

표현된 점, 넷째, 외국인들이 변호사와 연락하기 몹시 어려웠던 점, 마지막으로 망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점이 그러한 의심을 더욱 강화하였다. 즉, 외국인들에게 경찰 출두 통지서가 발송된 후 추방되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해당자들의 개인적인 정황이 하나하나 진정으로 고려되도록 충분히 보장하는 절차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제4의정서 제4조 위반이었다(*ibid.*, §§ 59–63).

17.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사건에서 청구인들(소말리아 및 에리트레아 국적자)은 개별 상황에 대한 어떠한 심리도 받지 못하고 리비아로 이송되었다. 이탈리아 당국은 신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저 청구인들을 배에 태웠다가 리비아에서 하선시켰다. 더구나 군함에 승선한 인원들은 개별 면담 진행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 통역사 또는 법률 고문의 조력도 없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퇴거의 본질이 집단적이어서 제4의정서 제4조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ibid.*, §§ 185–186).

18. *Georgia v. Russia (I)* [GC], 2014 사건에서 러시아 법원은 수천 명의 조지아 국민을 대상으로 추방 명령을 내렸다. 재판소의 지적에 따르면 조지아 국민 각각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기는 했지만, 해당 기간(2006년 9월~2007년 1월) 추방 절차의 진행 및 추방된 조지아 국민의 수로 인해 사건을 개인별로 나누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리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나아가 러시아는 조지아 국민을 체포, 구금, 추방하는 통합 정책을 이행하였다. 재판소는 국가가 자체 이민 정책을 수립할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흐름을 관리하다 발생하는 문제를 이유로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관행에 의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재판소의 결론에 따르면 조지아 국민을 추방할 때 사건을 개인별로 나누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제4의정서 제4조를 위반하는 행정 관행이었다(*ibid.*, §§ 171–178).

19. *Shioshvili and Others v. Russia*, 2016 사건은 네 명의 어린 자녀를 동반한 임신 말기의 조지아 여성을 러시아 영역에서 추방한 사건이다. 재판소는 개인별로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지도 않고 조지아 국민들을 추방한 2006년 가을에 발생한 행정 관행의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위반을 인정하였다(§ 71). 재판소는 동 기간 러시아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14명의 조지아 국민에 대한 사건인 *Berdzenishvili and Others v. Russia*, 2016, §§ 83–84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20. *Sharifi and Others v. Italy and Greece*, 2014 사건에서 이탈리아는 그리스만이 더블린 조약(Dublin system)에 따라 망명 신청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제3국 국민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제출한 망명 신청서를 심리할 책임이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주장하며 특정인들(아프가니스탄 국적자)을 그리스로 강제퇴거 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탈리아 당국이 모든 청구인을 추방하기보다는 개인별 상황을 분석하여 그리스가 실제로 관할권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귀환 조치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 더블린 조약을 참조하여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떤 사건이라도 협약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재판소는 개입된 제3자가 제출하거나 그 외 국제 조직에서 입수한 보고서에 실린 아드리아해 항구에서 이탈리아 국경 당국이 해당인들의 실체적·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무차별적으로 그리스로 돌려보낸 사례가 사건과 일치함에 주목하였다. 보고서 출처에 따르면 국경 경찰이 선의를 베풀어야만 서류 없이 체포된 사람들이 통역사 및 망명권 관련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접촉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선장에게 인계되어 그리스로 돌아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모든 요소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당한 즉각적인 귀환 조치가 제4의정서 제4조를 위반한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추방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ibid.*, §§ 214–225).

21. *M.K. and Others v. Poland*, 2020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제3조에 따라 논의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하였고, 국경 검문소에 직접 출두하여 국내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망명 신청서 제출 절차를 따라 적법하게 피청구국에 들어가려 하였다. 청구인들은 국경수비대의 개별 면담을 받고 폴란드 입국 거부 결정도 개별적으로 내려지기는 했지만, 망명 신청을

희망하는 청구인들의 진술이 무시되었고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유가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변호사 상담이 허용되지 않았고 심지어 국경 검문소에 있던 변호사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거절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폴란드 입국을 거부한 결정은 청구인들의 개별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 출두한 사람들의 비호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이들을 벨라루스로 돌려보내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결론지었다(또한 *D.A. and Others v. Poland*, 2021 및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 상황과 관련하여 *Sherov and Others v. Poland*, 2024 참조).

22. *S.S. and Others v. Hungary*, 2023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여행에 사용한 위조 서류로 피청구국에 들어가려 하였다. 국경 검문소에서 여행증명서 위조 사실이 발견되고 체포된 청구인들은 망명을 요청하였다. 국내법에 따라 양국 간 경유 구역에서만 망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후 이들은 헝가리-세르비아 국경 장벽 바깥으로 퇴거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출신국이 아닌 세르비아로 추방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유효하게 제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았다.

23. *Shahzad v. Hungary*, 2021 사건에서 청구인은 11명의 파키스탄 국적자와 함께 헝가리-세르비아 국경 장벽에 구멍을 뚫어 무단으로 헝가리에 들어갔다. 몇 시간 후 헝가리 경찰에 체포되었고 망명을 신청하고 싶다는 청구인의 진술에도 헝가리 당국은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하지도, 개별 상황 심리도 하지 않고 국경 장벽 밖으로 연행하였다. 청구인이 합법적 입국 수단에 유효하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위 제12항 참조)과 개별적인 추방 결정의 부재가 청구인의 행위 결과라고 볼 수 없음을 고려한 재판소는 이 추방의 성격은 집단적이며 제4의정서 제4조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24. *M.H. and Others v. Croatia*, 2021 사건에서 14명의 아프가니스탄 가족이 망명을 구하자, 크로아티아 경찰관이 거부한 후 기찻길을 따라 세르비아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청구인들이 크로아티아에 들어왔다는 물적 증거는 없었다. 청구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러 기관에서 무단으로 크로아티아에 들어간 사람들의 즉시 귀환 조치를 보고하였음을 고려한 결과,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사건 진술에 유리한 일응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일응의 증거를 반박할 논거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소는 사건에 대한 청구인들의 진술이 진실하다고 보았다(§§ 268-274).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에게 합법적 입국 절차에 진정으로 유효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음을 보여주지 않았으므로(위 12항 참조), 청구인들의 정황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추방한 것은 제4의정서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293-304).

25. *J.A. and Others v. Italy*, 2023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에서 망명을 구할 의도가 없었지만, 피청구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주자 등록 및 신원 확인을 위한 “핫스폿”에서 10일간 구금된 후 퇴거 조치되었는데, 개별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입국 거부 및 퇴거 명령을 한 사건이므로 제4의정서 제4조 위반이다(§§ 47 및 106-116).

26. *Moustahi v. France*, 2020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인 두 명의 청구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면서 임의로 함께하게 된 성인이 아동들의 퇴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 어떻게 보아도 그가 자신과 함께하던 아동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질문을 받았거나 스스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따라서 성인 동반자가 알거나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어린 두 아동이 추방된 것은 개별 아동의 상황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결정되고 이행되었다. 따라서 추방은 그 본질이 집단적이라고 규정되어야 했다.

## IV. 집단적 추방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예시

27. *Sultani v. France*, 2007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상황이 개별적으로 심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었고, 프랑스 당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전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겪을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청구인의 진술도 고려하였다(*ibid.*, § 83, 청구인은 “집단으로 항공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 퇴거 예정이었지만 재판소규칙의 규칙 39를 기준으로 재판소가 명시한 임시 조치로 인해 집행되지 않음. *Ghulami v. France* (dec.), 2009, 아프가니스탄으로의 강제 퇴거와 관련하여 동일한 접근 방식을 따름. 또한 집단적 추방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Andric v. Sweden* (dec.), 1999; *Tahiri v. Sweden*, 1995년 1월 11일 위원회 결정 참조).

28. 해당하는 개인들의 사적 정황에 대해 개별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들이 함께 경찰 본부로 연행되었고 일부는 집단으로 강제 퇴거되었으며 강제 퇴거 명령과 그에 상응하는 서한이 형식을 따르는 바람에 동일한 용어로 작성되고 과거 망명 절차 관련 결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M.A. v. Cyprus*, 2013, §§ 252–255, 시리아 쿠르드족 집단과 함께 집단적 추방 작전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에 대한 사건. *Čonka v. Belgium*, 2002, § 10의 정황과 비교). 일부 해당자의 신분과 관련하여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특히, 청구인의 경우 비호 절차가 아직 계류 중일 때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므로)만으로는 집단적 추방이라고 볼 수 없다(*M.A. v. Cyprus*, 2013, §§ 134 및 254).

29. *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4의정서 제4조가 어떤 정황이라도 개별 면담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외국인이 자신의 추방에 대한 반론을 진정으로 유효하게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한 반론을 피청구국 당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심리한다면 조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ibid.*, § 248). 청구인들은 두 차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고, 국적이 입증되었으며, 바란다면 추방에 대한 반론을 진정으로 유효하게 제기할 수 있었다. 비록 입국 거부 명령이 각 이주자의 개인 정보만 다를 뿐 비슷한 조건으로 작성되었고 당시 같은 국가(튀니지)에서 온 이주자가 여러 명 추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청구인들이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고 귀국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추방에 따른 다른 법적 애로 사항이 있다는 주장도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고 표준화된 성격의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명령이 비교적 단순하고 표준화되어 있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었다. 사건 고유의 정황에서 청구인 3명이 사실상 동시에 퇴거 조처되었다고 해서 이들의 추방이 집단적이라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ibid.*, §§ 249–254). 재판소는 *Asady and Others v. Slovakia*, 2020(슬로바키아 국경 경찰이 경찰서에서 통역사의 입회 하에 표준화된 질문으로 간단하게 면담한 후 표준 추방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을 우크라이나로 추방, §§ 63–71) 사건과 *M.A. and Others v. Latvia* ((dec.), 2022, 인드라 국경 통과 지점에서 벨라루스로 청구인들 추방, §§ 69–71) 사건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렸으며, 두 사건 모두 청구인들이 퇴거에 반론을 제기하고 개별 상황을 심리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0. *Shioshvili and Others v. Russia*, 2016, §§ 70–72, 및 *Berdzenishvili and Others v. Russia*, 2016, §§ 81–82에서 법원 또는 그 외 어떤 당국도 청구인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외국인에게 집단으로 출국을 강요하는 조치”의 대상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당시의 행정 관행으로 인해 두 사건의 청구인들이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두려워하여 추방 명령을 예상하고 출국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청구인들의 상황 자체에 출국을 강요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추방 결정 또는 그 외 공식적인 강압적 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었다. 재판소는 해당 정황에서 제4의정서 제4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1. *N.D. and N.T. v. Spain* [GC], 2020 사건에서 모로코로 이주한 두 명의 청구인은 사하라 이남 이주자 몇 명과 함께 북아프리카 연안의 스페인 거주지인 멜리야시(市)를 둘러싼 장벽을 넘어 스페인 입국을 시도하였다. 장벽을 넘자마자 이들을 체포한 보안청은 신원 확인 절차를 밟거나 사적 정황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국경 반대편으로 돌려보냈다. 2단계 심사를 적용한 재판소는 첫째, 스페인 법률이 청구인들에게 특히 베니안사르 국경 통과 지점에서 입국 허가를 구할 여러 가지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둘째, 청구인들은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추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하기 위해 국경 통과 지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은 합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지 못하였다. 개별 퇴거 결정이 부재한 이유는 청구인의 행위, 특히 공식 입국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결과이며, 그 자체로도 제4의정서 제4조의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재판소의 결론에 따르면 국가는 잠재적 망명 신청자가 포함된 외국인들이 합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따른 보호 요청권이 보장된 적절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특히 사전에 계획한 작전에 따라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고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장소에서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자국 영토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동시에 재판소는 사건을 이렇게 판결했다고 하여 체약국이 협약의 보장 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 특히 강제송환금지 의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ibid.*, §§ 206–232). 재판소도 *A.A.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2 (§§ 116–123) 사건에서 피청구국은 합법적 입국 절차에 진정으로 유효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않을 합당한 사유가 없다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 V. 협약 제13조와의 관계

32. 협약 제13조에 따른 유효한 구제 수단은 개념상 협약에 반하고 그 효과를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의 집행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재판소는 퇴거 시 직면한 위험과 관련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최소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를 제기한 청구인들의 망명 신청이 사실상 금지되고 자동 정지 효력이 있는 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없던 사건에 대해 제4의정서 제4조와 결합된 제13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M.K. and Others v. Poland*, 2020, §§ 212–220; *D.A. and Others v. Poland*, 2021, §§ 89–90; *Hirsi Jamaa v. Italy* [GC], 2012, §§ 201–207; *Sharifi and Others v. Italy and Greece*, 2014, §§ 240–243 참조). 반면, 청구인이 목적국에서 제2조 또는 제3조가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은 경우, 퇴거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제4의정서 제4조와 더불어 제1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2016, § 281). 이러한 상황에서 협약은 자동으로 정지되는 구제 수단을 보장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인이 제기한 소를 독립적이고 종립적인 국내 법정에서 철저하게 심리하여 추방 결정에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한다(*ibid.*, § 279; *Moustahi v. France*, 2020, §§ 156–164).

33. 외국인이 체약국의 영내에 합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절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였고, 청구인이 무단 입국이라는 행위를 시도한 결과로 개별화된 퇴거 절차가 부재한다면, 해당 체약국은 해당 퇴거에 대한 법적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질 수 없다(*N.D. and N.T. v. Spain* [GC], 2020, § 241–243). 반면, 경유 구역(즉, 합법적 입국 수단)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자신의 개인 상황을 심리하는 절차에 청구인이 유효하게 접근할 수 없다면, 퇴거에 대해 제소할 구제 수단의 부재로 제4의정서 제4조와 더불어 제13조 위반이다(*Shahzad v. Hungary*, 2021, §§ 75–79).

##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개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협약 제44조의 의미에 따라 최종적인 것이 아닌 소재판부 판결은 아래 목록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재판부 판결은 (a) 당사자들이 대재판부에 회부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b) 대재판부로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c) 대재판부 패널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됩니다. 대재판부 패널이 회부 요청을 승인하면, 소재판부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고, 이어지는 대재판부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ies), 위원회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또는 둘 중 하나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3자가 작성한 100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인용된 사건에 대한 언어별 번역본은 모두 해당 사건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Language versions)’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

*A.A.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nos. 55798/16 and 4 others, 5 April 2022

*Alibaks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no. 14209/88, Commission decision of 16

December 1988, Decisions and Reports 59

*Andric v. Sweden* (dec.), no. 45917/99, 23 February 1999

*Asady and Others v. Slovakia*, no. 24917/15, 24 March 2020

### —B—

*Becker v. Denmark*, no. 7011/75, Commission decision of 3 October 1975, Decisions and Reports 4

*Berdzenishvili and Others v. Russia*, nos. 14594/07 and 6 others, 20 December 2016

*Berisha and Halit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no. 18670/03, ECHR 2005–VIII (extracts)

### —C—

*Čonka v. Belgium*, no. 51564/99, ECHR 2002–I

—D—

*D.A. and Others v. Poland*, no. 51246/17, 8 July 2021  
*Dritsas and Others v. Italy* (dec), no. 2344/02, 1 February 2011

—G—

*Georgia v. Russia (I)* [GC], no. 13255/07, ECHR 2014 (extracts)  
*Ghulami v. France* (dec.), no. 45302/05, 7 April 2009

—H—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no. 27765/09, ECHR 2012

—J—

*J.A. and Others v. Italy*, no. 21329/18, 30 March 2023

—K—

*K.G. v. Germany*, no. 7704/76, Commission decision of 1 March 1977  
*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no. 16483/12, 15 December 2016

—M—

*M.A. v. Cyprus*, no. 41872/10, ECHR 2013 (extracts)  
*M.A. and Others v. Latvia* (dec.), no. 25564/18, 29 March 2022  
*M.H. and Others v. Croatia*, nos. 15670/18 and 43115/18, 18 November 2021  
*M.K. and Others v. Poland*, nos. 40503/17 and 2 others, 23 July 2020  
*Moustahí v. France*, no. 9347/14, 25 June 2020

—N—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and 8697/15, 13 February 2020

—O—

*O. and Others v. Luxembourg*, no. 7757/77, Commission decision of 3 March 1978

—S—

*S.S. and Others v. Hungary*, nos. 56417/19 and 44245/20, 12 October 2023  
*Shahzad v. Hungary*, no. 12625/17, 8 July 2021

*Sharifi and Others v. Italy and Greece*, no. 16643/09, 21 October 2014  
*Sherov and Others v. Poland*, nos. 54029/17 and 3 others, 4 April 2024  
*Shioshvili and Others v. Russia*, no. 19356/07, 20 December 2016  
*Sultani v. France*, no. 45223/05, ECHR 2007-IV (extracts)

—T—

*Tahiri v. Sweden*, no. 25129/94, Commission decision of 11 January 1995